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4. 8.(수), 10: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에 관한 건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2009-16-058)

- 서병조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LG데이콤 및 SK브로드밴드(주)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 신청을 원안대로 의결함.

※ 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LG데이콤	프로모션	~ '09.3.31	~ '09.6.30
	내 용	○ 기본형채널 60개 이하 제공시 기본상품 이용료(14,000원) 15% 할인	좌 등
SK브로드밴드	상용서비스 개시 특별할인	~ '09.3.31	~ '09.6.30
	내 용	○ 방송런칭 기념으로 기본상품 이용료(14,500원) 20% 할인	좌 등

2)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삼산유선방송사 등 5개사(2009-16-059)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삼산유선방송사 등 5개사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원안대로 의결함.

※ 대상사업자

상 호 명	방송구역	가입가구수	허가만료일
삼산유선방송사	인천 강화군 삼산면	120	2009.4.9
산청유선방송사	경남 산청군 산청읍 등	4,300	2009.5.2
이동유선방송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등	2,800	2009.5.8
의령유선방송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등	3,000	2009.5.10
(주)경남디지털넷	경남 함안군 가야읍 등	8,050	2009.5.10

3)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관한 건(2009-16-060)

-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공기관선진화 방침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09.4.1 국회의결) 제52조에 의해 신설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을 원안대로 의결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위원회 위원(총 5인)

분 야	성 명	전 · 현 직	비 고
경 영	이 성 해	(주)큐앤에스 대표이사	위원장
정보보호	임 종 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 전문대학원 원장	위 원
인터넷 주소자원	이 동 만	KAIST-ICC(舊ICU) 교수	위 원
법 률	조 형 섭	법무법인 은을 변호사	위 원
방송통신위원회	황 철 증	네트워크정책관	위 원

4) 방송심의규정의 반복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에 관한 건(2009-16-061)

- 김준상 방송운영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엠넷미디어(주)(채널명 : M.net)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언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좀 더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의결주문

1. 엠넷미디어(주)는 방송법 제109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70조제1항(별표5. 제13호)과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4,5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엠넷미디어(주)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가. 엠넷미디어(주)는 시정기간 동안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을 정도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시정기간 : 시정명령 처분일로부터 1년

5)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리에 관한 건(2009-16-062~064)

- 김준상 방송운영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조치 처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행방법을 위반한 (주)문화방송(MBC-TV)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69조제3항별표4제27호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방송사업자별 처분내용

법 인 명	채 널 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문화방송	MBC-TV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	과태료 250만원
한국방송공사	KBS대전-1TV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	과태료 250만원
(주)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	과태료 250만원

6) (주)KT, SK브로드밴드(주) 및 (주)LG데이콤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09-16-065~067)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IPTV 제공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및 LG데이콤이 IPTV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IPTV 콘텐츠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 강요 및 과도한 1:1 전송대역 요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6조에 의한 동 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변경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함.

* IPTV제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

※ 시정조치내용

【(주)KT, SK브로드밴드(주), (주)LG데이콤에 대하여】

1. IPTV 콘텐츠사업자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전송대역(DS3급, 45Mbps)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2. 합리적인 IPTV 방송프로그램 전송망 운용기준 마련하고, IPTV 방송국사에 타 사업자의 전용회선 인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하며,
3. 국내방송 전용회선 이용약관을 가급적 시장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것

7) SK텔레콤(주), (주)KT프리텔 및 (주)LG텔레콤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09-16-068~070)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08. 10월~12월 3개월 동안, SKT 등 이통 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하여 지속적인 스팸 전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주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에 의한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함.

※ 시정조치내용

가. SK텔레콤(주)에 대하여

1.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KISA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해지요청을 받은 전화번호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및 불법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2.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나. (주)KT프리텔과 (주)LG텔레콤에 대하여

1.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KISA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해지요청을 받은 전화번호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2.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8)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에 관한 건 (2009-16-071)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에너지 및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그린IT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환경과 방송통신의 전략적 융합을 도모하기 위한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의 녹색화

-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

- 녹색 방송통신 기술개발
- 녹색 방송통신 홍보 및 국민참여 확대

나. 방송통신을 활용한 녹색성장

- 녹색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 녹색성장 기반 마련
- 녹색 일자리 창출

다. 소요예산('09년부터 '12년까지 총 7,234억원)

(단위 : 억원)

추진분야	소요예산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	196	429	534	615	1,774
□□ 녹색 방송통신 기술개발	9	836	1,342	1,335	3,522
□□ 녹색 방송통신 홍보 및 국민참여 확대	3	14	16	18	51
□□ 녹색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16	31	32	27	106
□□ 녹색성장 기반 마련	115	122	128	133	498
소 계	339	1,432	2,052	2,128	5,951
□□ 녹색 일자리 창출	108	642	413	120	1,283
총 계	447	2,074	2,465	2,248	7,234

사. 보고사항

아. 기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월 15일(수)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7:05)

※ 11:50 정회, 16:00 속개